# 정 관

사단법인 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

# 사단법인 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 정관

제정 13. 11. 20.

개정 22. 02. 25.

개정 22. 08. 25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본 협의회는 사단법인 "전국 대학 학술림 협의회"(이하 "본 협의회"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본 협의회는 전국대학교 학술림 설립목적인 산림과학분야의 교육과 연구 발전 및 학술림 운영을 통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사업내용)** ①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대학의 산림과학분야 교육과 연구 지원
2. 학술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
3. 학술림 관련 정보와 연구자료 교환
4. 학술림의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사업
5.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사업
2. 일반기업체, 비영리법인,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, 자문 및 기타 지원사업
3. 본 협의회를 알리기 위한 도서 및 정기 간행물 사업

**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** 본 협의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림 내에 둔다.

**제5조 (위원회의 설치)** 본 협의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회 원

**제6조 (회원의 자격과 구분)** 본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1. 정회원은 학술림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4년제 국립과 사립대학교 학술림의 대표자로 한다.
2. 특별회원은 본 협의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.

**제7조 (회원의 가입)** 정관 제6조에 의한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본 협의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**제8조 (회원의 권리)** 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(후단삭제)

**제9조 (회원의 의무)** ① 회원은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본 협의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③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 단, 회원 자격정지 이후, 미납된 회비 전액을 납부할 경우 회원으로서 자격이 회복된다.

**제10조 (회원의 탈퇴)** 회원은 자의에 의해 본 협의회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**제11조 (회원의 징계)**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

서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## 제 3 장 임 원

**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총무 1인
4. 이사 5인(회장, 부회장, 총무 포함)
5. 감사 2인

**제13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**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.

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4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취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⑤ 이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기간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⑥ 총무는 이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 총무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4조 (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)**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5조 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

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.

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.

⑤ 감사는 본 협의회의 재산과 운영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감독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고문 등)** ① 본 협의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의회 운영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## 제 4 장 총 회

**제17조 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17조2 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, 예산 및 회비 변경의 승인
3. 전년도 결산 추인
4.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5. 본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7.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

**제18조 (총회의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나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,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개시 7일

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8조의2 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적어도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2. 정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소집이 안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19조 (총회 의결 방법)**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해산, 통합 등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참석을 회원이 위임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 대리자는 위임자의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0조 (총회의 의결 제척)** ① 회장, 부회장,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또는 임원 자신과 협의회 이해가 상반될 때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20조의2 (총회의 회의록)**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정회원 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## 제 5 장 이 사 회

**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**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.

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적어도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3조 (이사회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
5.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
7. 임원(회장, 감사를 제외한다)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
8. 기타 중요사항

**제24조 (의결 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 정족수에는 산정할 수 없다.

**제24조2 (이사회 회의록)**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# 제 6 장 재산 및 회계

**제25조 (재정 등)** ① 본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기관의 회비
2. 기부금
3. 연구 사업비
4. 기타 수입금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**제26조 (회계연도)**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**제27조 (사업의 계획 및 예산)** 본 협의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8조 (사업의 실적 및 결산)** 본 협의회는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한 후 승인을 받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보고서
2.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
3. 감사의견서
4. 잉여금 처분(안) 및 결손금 처리방안

**제29조 (회계감사)** 감사는 본 협의회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30조 (보수)**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 제 7 장 보 칙

**제31조 (운영규정)** 본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32조 (정관의 개정)** 본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 (해산)**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, 총회에서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청에 신고한다.

**제33조2 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** 본 협의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**제34조 (잔여재산의 처리)** 협의회 해산시 잔여 재산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
2022년 8월 25일

사단법인 전국대학학술림협의회

회장 박 주 원 (인)